◉환경부고시제2021-4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0조에 따른「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교육훈련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교육훈련 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00조에 따른 교육훈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법 제38조의6에 따라 등록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수수료	비고
사이버 교육	무료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집합 교육	185,000원	(사)한국상하수도협회

비고 1. 집합교육은 집합+사이버교육 포함이며, 집합(14시간)+사이버(10시간) 기준

2. 중식비(16,000원) 포함이며, 온라인 실시간 교육 시에는 중식비 제외

제3조(수수료의 납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제2조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1-50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를 국내·외의 법령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자료제공 신청, 제공 방법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제공 신청) 규칙 제18조제1항의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서식의 자료제공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동의받은 사용용도 및 목적 이외의 사용용도 및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해당 사용용도 및 목적에

따른 자료제공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3조(자료제공 절차)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신청자료의 사용용도 및 목적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별표2의 자료제공 동의서와 함께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자료제공금액)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3조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동의서를 통지받은 자에게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자료제공금액을 납부받을 수 있다. 다만, 자료제공금액은 자료제공이 이루어진 해당 연도에만 납부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취득금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자료제공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자료제공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금액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자료제공금액은「환경정책기본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5조(신용카드 등을 통한 자료제공금액의 납부) ① 자료제공금액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금융결제원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금융결제원은 제2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공금액의 회계기관)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자료제공금액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세입징수관 및 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보호) 규칙 제18조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신청자의 신원,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취득금액 등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신청 및 자료제공금액 납부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료제공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요청자료	①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②신청자료 명칭	
	③신청자료 사용용도 및 목적	
	신청자료의 사용 단위	[ ] 개별 사업자 [ ] 협의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20,000원 (중기업은10,000원, 소기업은4,000원)

작성방법

1. 이 자료제공 신청서는 살생물물질별로 나누어 작성한 후 요청합니다.
2. ①란은 자료제공을 요청하려는 살생물물질의 명칭을 적습니다.
3. ②란은 자료제공을 요청하려는 시험자료의 명칭을 적습니다(자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나열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4. ③란은 자료제공 동의 완료 후 해당 시험자료의 사용용도 및 목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자료제공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자료제공 동의 결정 및 고지서 발급	⇒	자료제공금액 납부	⇒	자료제공 동의서 교부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2]

제 호

자료제공 동의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살생물물질명 :
6. 고유번호(CAS No. 등) :
7. 자료제공 내용

시험자료 명칭	자료 출처				
	시험수행기관	시험일시	시험방법	사용용도 및 목적	비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신청 자료의 사용용도 및 목적의 적정성을 인정하여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15호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9조제1항, 제81조에 따라 아래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상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

기존 내용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재)경북테크노파크	이재훈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리 1025번지
2	에스아이셀	김창인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리 1025번지
3	㈜에코프로GEM	김수연, 진기두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산단남로 75번길 15
4	GS건설(주)	임병용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리 1025번지
5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특구내주소)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밸리산업 일원
6	㈜해동엔지니어링	이완형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벤처동 바-107호 (특구내주소)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밸리산업 일원
7	㈜포엔	최성진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07 1층(청풍빌딩) (특구내주소)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밸리산업 일원
8	㈜에임스	최성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70 (특구내주소)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밸리산업 일원 705호(케이디유타워)
9	㈜피엠그로우	박재홍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싸-205 (특구내주소)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밸리산업 일원
10	㈜엔씨이노션	나채민	경북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7 202호(율정빌딩) (특구내주소)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밸리산업 일원
11	㈜솔라라이트	김월영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76 5층 (특구내주소)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밸리산업 일원
12	㈜빈센	이칠환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55 실험동 102동 (특구내주소)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밸리산업 일원
13	㈜신화테크	김정수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송덕로 212번길 58 (특구내주소)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밸리산업 일원
14	㈜뉴테크엘아이비	김창준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로 14 2층 (특구내주소)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밸리산업 일원
15	성일하이텍(주)	이강영	전북 군산시 군산산단로 143-12 (특구내주소)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밸리산업 일원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변경 사항

구분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사유
사업자 해지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밸리산업일원	특구내 사업장 이전 곤란
	㈜엔씨이노션	나채민	경북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7 202호(율정빌딩)	경영상 이유
	㈜신화테크	김정수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송덕로 212번길 58	경영상 이유

비고 관보 제19803호(2020. 7. 28), 226쪽, 227쪽